

#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 contents



## 이주의 초점

1. 팬데믹 1년, 업(業)의 본질과 개념이 바뀐다



## 관세·무역 NEWS

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 확대 예정

3.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産 의류 對EU 수출 시 관세 혜택

4. 필리핀, 수입 車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5.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반덤핑 본조사 개시

6. '히토류' 최대 생산국 중국 '수출입 관리 강화 정책' 발표

7. 한·중미 FTA, 3월 1일부터 '파나마'도 발효



## 개정법령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9.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민원사례

11.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여부 관련 질의

12. 확정가격 신고 후 추가 환급 및 세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



Cover

## 팬데믹 1년, 업(業)의 본질과 개념이 바뀐다 - I

사명 변경부터 사업 구조 재편까지 ... 화두는 '근본적 혁신(Deep Change)'

이주의  
초점

올해 핵심 키워드로 '브이노믹스(V-nomics)'가 자주 거론된다. 바이러스(Virus)의 첫 영문자 'V'를 딴 신조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세·무역  
NEWS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친환경 등에 기반한 산업들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으며, 경제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창고만 있는 소매점, 주방만 있는 음식점 등 온라인 주문과 배달 플랫폼을 활용해 운영하는 '다크 이코노미(Dark Economy)'는 비대면 수요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브이노믹스 시대의 한 단면이다.

개정  
법령

◆ 기업의 변신은 무죄, 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민원  
사례

기업들이 사명(社名)을 바꾸고 있다. 단순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이 아니다.

사업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브이노믹스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친환경 사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使命)이 함께 묻어 있다.

기타

Cover

## 팬데믹 1년, 업(業)의 본질과 개념이 바뀐다 - II

이주의  
초점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는 '탈(脫)석유' 방침을 세웠다.

기존 석유사업만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만간 대대적인 설비 투자로 대규모 화학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S-Oil도 정유사업 비중을 줄이고, 화학 및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현대자동차·기아는 사업의 본질을 기존의 '자동차'에서 '이동수단'으로 재정의했다. 기아자동차 사명에서 '자동차'를 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석유회사는 석유사업을 접고, 자동차회사는 사명에서 '자동차'를 뺐다.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  
법령

◆ 그린 비즈니스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 움직임

SK그룹은 '경영 혁신'을 넘어 기업의 근원까지 변화시키는 'Deep Change(근본적 혁신)'에 사활을 걸었다.

민원  
사례

SK그룹은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어록 "가족만 빼고 다 바꿔라"는 말처럼, 사업 구조부터 자산, 기업문화까지 모두 바꾸는 그룹 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기타

Cover

## 팬데믹 1년, 업(業)의 본질과 개념이 바뀐다 - III

이주의  
초점

그중 SK이노베이션은 ESG 경영을 완성하는 전략인 'Green Balance 2030'을 통해 그린사업에서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Green Balance 2030'은 2030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상쇄한다는 중장기 성장 전략이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관련 목표를 구체화하고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과거와 달리 배터리 사업 등에서 보여준 'Deep Change' 전략을 바탕으로 친환경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무역  
NEWS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른 배터리 및 관련 소재 사업은 물량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석유·화학사업 부문에서도 친환경 제품 개발, 생산 프로세스 개선 등 그린 비즈니스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법령

◆ 신세계의 야구단 인수, 유통업을 재정의하다

최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전부터 유통업의 경쟁상대는 야구장과 테마파크라며, 유통업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기도 했다.

민원  
사례

주말에 잠재적 고객을 흡인하는 야구장 등도 신세계 입장에서는 경쟁자라는 의미인데, 실제 봄만 되면 스타필드 고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기타

Cover

## 팬데믹 1년, 업(業)의 본질과 개념이 바뀐다 - IV

이주의  
초점

유통업은 단순히 상품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게 정용진 부회장의 경영철학인 것이다.

실제로 신세계는 연초부터 프로야구단(SK 와이번스) 인수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세계는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시장 확장을 위해 몇 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타진해왔다"며, "특히 기존 고객과 야구팬들의 교차점이나 공유 경험이 커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무역  
NEWS

프로야구 관중 800만 시대를 맞아 두꺼운 야구 팬층이 온라인시장의 주도적 고객층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개정  
법령

이젠 유통업도 쇼핑, 여가, 외식, 문화생활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센터'를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 고객의 시간을 자신의 공간에 묶어두는 마케팅 전략을 '시간 점유 마케팅'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면서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민원  
사례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우리네 일상도 바뀌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팬데믹이라는 생존의 갈림길 앞에서 'Deep Change'에 동그라미를 쳤다. 우리의 고개가 위·아래로 흔들릴지, 좌·우로 흔들릴지 지켜볼 일이다.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 확대 예정 - 1

이주의  
초점

기재부, 「관세법·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

먼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각각 20%p씩 높인다.

민원  
사례

이에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골판지 제조기, 인쇄기 등 공장자동화물품 52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올 말까지 확대된 관세감면율을 적용 받을 전망이다.

기타



Cover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 확대 예정 - II

이주의  
초점

또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총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000분의 18(1.8%)에서 연 1,000분의 12(1.2%)로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해 면세기준을 정하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무역  
NEWS

이 외에도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정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령

또 납세자의 귀책 사유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이 지연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Cover

##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産 의류 對EU 수출 시 관세 혜택 - I

이주의  
초점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EU 수입통관 분부터 소급 적용  
‘원산지 누적 조항’ 적용 ... 對베트남 직물 수출 증가 기대

한국産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한 의류제품(제61·62류)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産으로 인정받아 EU·베트남 FTA(EVFTA)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베트남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의류에 결합 및 추가 가공된 한국産 직물을 베트남産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관세·무역  
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베트남産 의류를 EU로 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베트남産 직물로 만들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EVFTA에 예외적으로 ‘한국産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産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조항이 반영돼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정  
법령

해당 원산지 누적 조항은 지난해 12월 23일(EU 수입통관 기준)부터 소급 적용된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2월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비로소 혜택이 시작된 것이다.

민원  
사례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産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 규정(조항)을 허용한 최초의 FTA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 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베트남은 의류 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위 직물 공급국이다.

기타

Cover

##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産 의류 對EU 수출 시 관세 혜택 - II

이주의  
초점

관세청은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대만 등의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EVFTA 누적을 적용받으려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무역  
NEWS

특히 직물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직물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령

참고로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원  
사례

기타

## 【 EVFTA 활용 가능 직물(예시) 】

50류	
5007	Woven fabrics of silk or of silk waste
51류	
5111	Woven fabrics of carded wool or of carded fine animal hair.
5112	Woven fabrics of combed wool or of combed fine animal hair.
5113	Woven fabrics of coarse animal hair or of horsehair.
52류	
5208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not more than 200g/m <sup>2</sup> .
5209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cotton, weighing more than 200g/m <sup>2</sup> .
5210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not more than 200g/m <sup>2</sup> .
5211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cotton,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bres, weighing more than 200g/m <sup>2</sup> .
5212	Other woven fabrics of cotton.
53류	
5309	Woven fabrics of flax.
5310	Woven fabrics of jute or of other textile bast fibres of heading 53.03.
5311	Woven fabrics of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woven fabrics of paper yarn.

## 【 EVFTA 활용 가능 직물(예시) 】

54류	
5407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 heading 54.04.
5408	Woven fabrics of artificial filament yarn including woven fabrics obtained from materials of heading 54.05.
55류	
5512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85% or more by weight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3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not exceeding 170g/m <sup>2</sup> .
5514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cotton, of a weight exceeding 170g/m <sup>2</sup> .
5515	Other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5516	Woven fabrics of artificial staple fibres.
56류	
5602	Felt,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5603	Nonwovens, whether or not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 【 EVFTA 활용 가능 직물(예시) 】

58류	
5801	Woven pile fabrics and chenille fabrics, other than fabrics of heading 58.02 or 58.06.
5802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heading 58.06; tuft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57.03.
5803	Gauze, other than narrow fabrics of heading 58.06.
5804	Tulles and other net fabrics, not including woven,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lace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other than fabrics of headings 60.02 to 60.06.
5805	Hand-woven tapestries of the type Gobelins, Flanders, Aubusson, Beauvais and the like, and needle-worked tapestries (for example, petit point, cross stitch), whether or not made up.
5806	Narrow woven fabrics, other than goods of heading 58.07; narrow fabrics consisting of warp without weft assembled by means of an adhesive (bolducs).
5807	Labels, badges and similar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in the piece, in strips or cut to shape or size, not embroidered.
5809	Woven fabrics of metal thread and woven fabrics of metallised yarn of heading 56.05, of a kind used in apparel, as furnishing fabrics or for similar purpo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5810	Embroidery in the piece, in strips or in motifs.
5811	Quilted textile products in the piece, composed of one or more layers of textile materials assembled with padding by stitching or otherwise, other than embroidery of heading 58.10.

Cover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産 의류 對EU 수출 시 관세 혜택 - VI

【 EVFTA 활용 가능 직물(예시) 】

이주의  
초점

59류	
5901	Textile fabrics coated with gum or amylace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outer covers of books or the like; tracing cloth; prepared painting canvas; buckram and similar stiffened textile fabrics of a kind used for hat foundations.
5903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9.02.
5906	Rubberised textile fabric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9.02.
5907	Textile fabrics otherwise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painted canvas being theatrical scenery, studio back-cloths or the like.
5908	Textile wicks, woven, plaited or knitted, for lamps, stoves, lighters, candles or the like; incandescent gas mantles and tubular knitted gas mantle fabric therefor, whether or not impregnated.
5911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specified in Note 7 of this Chapter.
60류	
-	60류 전체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 Cover 필리핀, 수입 車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 I

승용차 1대당 7만 페소·경상용차 1대당 11만 페소 부과

이주의  
초점

필리핀정부가 자동차 수입 급증에 자국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잠정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무역  
NEWS

KOTRA 마닐라무역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수입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1월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HS Code 8703, passenger cars/vehicles)의 경우 1대당 7만 페소, 경상용차(HS Code 8704, light commercial vehicles)는 1대당 11만 페소가 부과된다.

개정  
법령

잠정관세는 관보 게재일(2021.1.5.) 기준 15일 이후 200일간 부과되며, 해당 조치 기간 중 필리핀 관세위원회 정식 조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 관세 발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민원  
사례

이 같은 조치는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 Philippine Metalworkers Alliance)가 2014~ 2018년 자동차 수입이 급증해 자국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1월 WTO에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 기타



Cover

## 필리핀, 수입 후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 II

이주의  
초점

일각에서는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필리핀 자동차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또 다른 고용 축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스즈와 혼다가 필리핀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과 올 3월 닛산 또한 필리핀 조립공장을 폐쇄할 예정임을 밝혀 고용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무역  
NEWS

이에 필리핀 통상산업부 Ramon Lopez 장관은 “과거 혼다 자동차 조립공장 폐쇄로 고용문제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같은 안전 장치는 자동차 제조 업체가 필리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KOTRA는 “필리핀정부는 자동차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생산거점을 필리핀에 유치·설립 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는 ‘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 및 관세 】

품목명	HS Code	세이프가드 관세
승용차 (passenger cars/vehicles)	8703	7만 페소/대
경상용차 (light commercial vehicles)	8704.21.19 / 8704.21.29	11만 페소/대

※ 자료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출처 - CUSTRA

Cover

##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반덤핑 본조사 개시 - I

예비덤핑률 최대 49.04% ... 본조사 후 과세부와 여부 확정

이주의  
초점

무역위원회가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무역  
NEWS

무역위는 2월 18일 제409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정된 예비덤핑률은 중국産 49.04%, 인도네시아産 29.68%, 대만産 9.20~9.51%다.

개정  
법령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제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쓰인다.

민원  
사례

2019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에 달하며,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40%대,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이 40%대, 기타국産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한다.

앞서 포스코는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지난해 7월 신청했다.

기타

Cover

##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반덤핑 본조사 개시 - II

이주의  
초점

무역위 예비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간(2017 ~2019년) 동안 중국·인도네시아·대만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시행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관세·무역  
NEWS

【 공급자별 예비 덤핑률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생산자)	예비덤핑률(%)
중국	산시타이강 및 그 관계사	49.04
	리스코	49.04
	그 밖의 공급자	49.04
인도네시아	인니 청산 및 그 관계사	29.68
	그 밖의 공급자	29.68
대만	유스코 및 그 관계사	9.20
	왈신	9.51
	그 밖의 공급자	9.30

개정  
법령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Cover

**‘희토류’ 최대 생산국 중국 ‘수출입 관리 강화 정책’ 발표 - I**

KOTRA, ‘자원 무기화’로 美 대응 ... 우리 기업도 대비해야

이주의  
초점

중국정부가 희토류의 수출입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도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정부는 희토류의 생산 및 수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희토류 관리조례(초안)’를 1월 15일 발표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희토류 관련 정책은 산업체인의 전반적인 정비와 공급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희토류를 ‘보호해야 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광·생산·수출량의 계획적인 관리에 주력하던 것이 2015년에 수출 쿼터제가 폐지되고, 관련 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희토류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희토류 관리조례는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채광·제련·생산에서 제품 유통까지 희토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Cover

## '희토류' 최대 생산국 중국 '수출입 관리 강화 정책' 발표 - II

그중에서도 공급 부분, 특히 산업체인 전반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주의  
초점

기존 프로젝트 심사 제도, 개발·제련 분리·생산 총량 지표관리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면서 불법 개발·제련 분리·생산·유통분야에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제품 추적 시스템 및 비축 제도 등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당 조례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수출통제법'의 적용을 명시해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입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KOTRA는 이처럼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 및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로 중국 내 희토 제품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개정  
법령

최근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풍력발전설비,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新에너지차 등 분야에서 희토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는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중국 희토류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다 1월 18일 기준 바오터우 희토류 가격이 종합지수 발표 이래 최초로 1400선을 돌파했으며, 프라세오디뮴(Praseodymium)·네오디뮴(Neodymium)의 가격(1월 15일 기준)은 톤당 44.35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10.5% 상승했다.

민원  
사례

해당 물질들은 마이크로폰, 헤드폰, 하드디스크 등 소형기기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또는 대형 발전기 등에서 사용되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도 쓰인다. 특히 고연색램프, 광자기기록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산화 테르븀의 경우 톤당 842.5만 위안으로 전월대비 25.3% 급등했다.

기타

Cover

## '희토류' 최대 생산국 중국 '수출입 관리 강화 정책' 발표 - III

이주의  
초점

또 美·中 분쟁이 장기화·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관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시행된 중국의 '수출통제법'에서는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해 명시했는데, 이번 희토류 관리조례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관세·무역  
NEWS

KOTRA는 중국의 희토 산업 고도화 및 통제 강화 정책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희토류 공급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수요 급증과 관련 기술 개발 경쟁을 예상했다.

개정  
법령

이와 함께 중국의 희토류 공급 축소는 각국의 생산 확대, 대체·재활용 기술 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다. 일례로 미국의 화학회사인 블루라인社는 호주의 광산회사인 Lynas社와 합작해 미국에 희토류 분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2019년부터 자체 개발 생산에 착수하는 등 중국의 공급 축소에 대비하고 있다.

민원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한국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과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입량은 각각 7만 5,000kg, 314만kg이었다. 그중 중국産 비중은 각각 96%, 58%에 달한다.

KOTRA는 "중국産 희토류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희토류 수입국 다변화, 기술 개발을 통한 재활용 촉진, 대체재 개발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타



## 【 희토류 관리조례(초안)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프로젝트 심사	- 희토광 개발·제련 프로젝트 투자 사전에 정부 허가 취득 의무화
총량 지표 관리	- 희토 산업 발전 계획·광산자원계획 및 산업정책에 의거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기초를 충분히 반영한 시장 수요 및 기술 수준에 따른 개발·제련·생산지표 책정
유통 관리	- 기업, 개인, 단체의 희토류 제품 불법 개발·제련·생산·구입 금지 - 제품 정보 추적 시스템 구축,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 희토류 수출입 기업에 대외무역, 수출 통제 등 관련 법 준수 강조
비축 관리	- 희토 자원 및 관련 제품의 전략적 비축 제도 구축 - 비축 불량 역시 총량지표에 반영해 사용 엄격 통제
법적 처벌	- 불법 개발·생산자에 대해 불법소득 1~5배 수준, 또는 10만~100만 위안 벌금 부과, 영업집조 등록 말소 처분 등 엄벌 조치

## Cover 한·중미 FTA, 3월 1일부터 '파나마'도 발효 - I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이주의  
초점

오는 3월 1일자로 파나마와의 한·중미 FTA도 발효된다.

중미 5개국 중 니카라과, 온두라스와는 2019년 10월 1일, 코스타리카는 같은 해 11월 1일, 엘살바도르와는 지난해 1월 1일 각각 발효한 바 있다.

관세·무역  
NEWS

외교부는 한·중미 FTA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에 따라 3월 1일자로 파나마와의 한·중미 FTA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협정 발효일 당시 대한민국과 파나마 간에 운송 중이거나 보세구역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수출입 모두 해당)도 한·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다.

민원  
사례

한편 중미 경제의 중심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포괄적으로 체결한 FTA는 한·중미 FTA가 유일하다. 특히 높은 수준으로 관세양허가 이뤄져 한·중미 FTA는 우리 수출기업의 중미시장 진출에 크게 일조할 전망이다.

## 기타

## 【對파나마 수출 유망품목】

이주의  
초점

HS코드	품목	對세계 수입	연평균 증가율	對한국 수입	한국 점유율	기준세율	양허유형
4011.10	승용차용 타이어	136.3	9.5%	8.2	6.0%	10	10년 균등 철폐
7113.19	기타 귀금속	91.8	4.4%	1.6	1.8%	10	즉시철폐
8409.99	엔진 부품	5.8	14.6%	0.7	12.2%	3~5	즉시철폐
8415.90	차량용 냉각기부품	15.5	6.9%	1.5	9.4%	3~10	즉시철폐
8708.29	차체 부품	5.2	69.8%	0.9	18.0%	0~5	즉시철폐
8708.30	브레이크와 부품	9.6	8.2%	1.5	15.2%	8	즉시철폐
8708.93	클러치와 부품	20.4	12.3%	2.6	12.7%	8	즉시철폐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I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사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출처 - 법제처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Cove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II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주요내용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관세·무역  
NEWS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개정  
법령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Cove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III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주요내용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Cover

#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I

[대통령령 제31454호, 2021. 2. 1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 개정사유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에 선박회사·항공사 외에 탁송품 운송업자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위하여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 휴대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등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 □ 주요내용

가.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 신설)

수입 물품에 할당관세 또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늦춰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함.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Cover

##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II

[대통령령 제31454호, 2021. 2. 1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주요내용

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축소(제141조의2제1항제1호)

관세 등의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서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함.

관세·무역  
NEWS

다. 적재화물목록을 사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요건을 적재화물목록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되거나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등으로 정함.

개정  
법령

라. 휴대품의 유치사유 구체화(제219조제1항 신설)

세관장이 여행자·승무원의 휴대품을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보아 유치할 수 있는 경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거나 성분·규격 등이 불명확하여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세관공무원의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Cover

#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III

[대통령령 제31454호, 2021. 2. 1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주요내용

마.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범위(제231조제1항 신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정함.

관세·무역  
NEWS

바.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및 대상 자료 추가(별표 3)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개정  
법령

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두목 및 디목 신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 현장에서의 물품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에게 면세품을 현장 인도하거나,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민원  
사례

출처 - 법제처

기타

Cove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448호, 2021. 2. 17., 전부개정.]

이주의  
초점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상호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중재 절차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잔액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출처 — 법제처

Cover

##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생산국은 이탈리아이며, 수출국은 영국인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지난해 11월 15일 구매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했는데, 이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한·영 FTA 발효 전에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이후부터 한·영 FTA 발효). 따라서 문의한 물품은 지난해 11월 15일에 수입한 물품으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 ③ 수입·납세신고 정정 신청서
- ④ 원산지 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정  
법령

민원  
사례

∴ 관세사 측에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의뢰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통관지 세관에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및 사후 협정 적용 여부를 심사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확정가격 신고 후 추가 환급 및 세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잠정가격 신고한 물품을 일반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한 뒤 확정가격 신고를 할 경우 추가 환급 또는 세금 납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잠정가격 신고를 한 수입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원상태 포함)하고 환급 신청 시점에 확정가격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무역  
NEWS

∴ 환급 신청 시 신청 시점의 원재료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해당 수입신고 건에 대해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특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과다 환급금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  
법령

∴ 반대로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늘어난다면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등